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0호 2018. 8. 3.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9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90호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593호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604호 2018년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 시상계획 공고 ----- 17
- 삼척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4호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8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9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03.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217-28 외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0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천거리 21-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217-28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 명칭활용(미로, 근덕)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소금강로 2675-4	폐지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구간내 산수가 수려한 정선 소금강이 소재함을 반영	
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77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길 406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2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196	2018080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 지역 위치복합활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85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76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초당저수지명칭 활용	
6		이	하	여	백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천거리 21-1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미근로 217-28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미로, 노곡, 근덕)연결 구간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 근덕)	
폐지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소금강로 2675-4	폐지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구간내 산수가 수려한 정선소금강이 소재함을 반영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 77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기길 406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26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196	20180803	건물철거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복합활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85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당길 276	20180803	건물신축	20090626	지역명(마을명), 초당저수지명칭활용	

삼척시 공고 제2018-590호

#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2018/2019년 삼척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삼척시장

### □ 어업권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

어업의 명칭	어업권 포기 및 처분현황				어장의 위치	어업권자	비고
	구분	면허번호	면허기간	면적			
어류등 양식어업	포기	삼척 제14호	1998.07.13. 2018.07.12.	1.0ha	삼척시 원덕읍 비화리 지선	서성태	재개발 (기간만료)
	신규	삼척 제2018-1호	2018.07.13. 2020.07.12.	1.0ha			

삼척시 공고 제2018-593호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삼척시장

###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삼척시 영유아에게 체험공간 제공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함.
-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 2. 주요내용

- 가. 실내 영유아놀이터의 설치목적 (안 제1조)
-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1)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 2) “이용료”란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 다. 실내 영유아 놀이터의 개관 및 휴관 (안 제5조)
  - 1) 매일 개관함을 원칙
  - 2) 휴관일 :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라. 실내 영유아 놀이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7조)
  - 1) 이용료 징수 : 평일 1,000원, 토·일·공휴일 2,000원
  - 2) 감면기준 : 장애영유아보호자, 기초수급자 등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7. 31. ~ 2018. 8 . 20.(21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삼척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33-570-3768, FAX : 033-570-313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 전 화 : 033 - 570 - 3768

- 팩 스 : 033 - 570 - 3138

- E-mail : [mihwa0113@korea.kr](mailto:mihwa0113@korea.kr)

#### 5.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실내 영유아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실내 영유아 놀이터”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유아놀이기구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영유아놀이기구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영유아놀이기구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놀이기구가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실내 영유아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영유아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놀이터 운영 사업
- 2. 영·유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 3.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1월 1일
- 2. 설날(음력 1월 1일)
- 3. 추석(음력 8월 15일)
-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 1. 어린이날
- 2. 국경일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드는 행위
-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유아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징수 기준**

(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이용 기준	이용료 (동반보호자)	비 고
영유아 놀이시설	평일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li>· 1일 1회 초과 이용시에는 이용요금의 50%만 징수</li> </ul>
영유아 놀이시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2,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li> </ul>

- ※ 1. 영유아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2. 타 시·군의 거주자에게는 이용료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 관련)

시 설	감면율	대 상
영유아 놀이시설	전액 감면	①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영유아의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10명이상 단체 인솔자 1명 ③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0%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 1. 세자녀 이상 다자녀의 보호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10명이상 단체

- ※ 1. 중복감면사유 발생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 관련조문 : 제11조 (재정지원)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가이드라인 준용
- 시설 운영비 : 냉·난방비, 공과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 나. 추계 결과

- 소요예산비용(연간) : 70,000천원
- 연도별 추계

(단위:천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투입비용	429,000	70,000	77,000	85,000	94,000	103,000	

#### 다. 자원조달 방안 : 시비확보

### 3.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장 박관희
연락처	(033) 570- 3320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b>세입</b>	16,000	17,600	19,360	21,000	23,000	96,960
- 시설 사용료	16,000	17,600	19,360	21,000	23,000	96,960
<b>세출</b>	70,000	77,000	85,000	94,000	103,000	429,000
- 인건비	52,000	57,000	63,000	70,000	77,000	
- 일반운영비	18,000	20,000	22,000	24,000	26,000	
<b>재원 조달</b>	70,000	77,000	85,000	94,000	103,000	429,000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70,000	77,000	85,000	94,000	103,000
	지방세	54,000	59,400	65,640	73,000	80,000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16,000	17,600	19,360	21,000	23,00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삼척시 공고 제 2018-604호

### 2018년 삼척시농림어업인대상 시상계획 공고

세계화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삼척 농어촌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을 발굴·시상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삼척시장

#### 1. 시상 부문

부 문 별	세 부 내 용
농업진흥부문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특산물 가공, 친환경 유기농산물생산 등 농업기술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
축산진흥부문	축산물의 생산·판매등 새로운 사육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 및 축산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자
임업진흥부문	산림육성 및 임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정책 추진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수산진흥부문	어업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수산관련기술개발과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어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자

#### 2. 수상후보자 자격

삼척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이나 단체

- 1)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성장을 주도하고 동일부문에 3년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농림어업인
- 2) 단 체 : 농림어업 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 생산, 공동 가공 및 공동 유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농림어업조합법인, 농림어업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어촌계 등 농림수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 3. 수상후보자 추천

- 가. 수상후보자 추천은 부문별 관련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시단위 농림수산업단체장이 추천
- 나. 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4. 추천기한 및 접수처

- 가. 추천기한 : 2018. 09. 14일까지
- 나. 접 수 처 : 삼척시청 농정과 ☎(033)570-3373
- ※ 우편발송시 2018. 09. 14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5. 추천 구비서류

- 가. 추천서 1부
- 나.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 다.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
- 라.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 6. 시상 계획

- 가. 일 시 : 2018년 「농업인의 날」 기념식
- 나. 시상내용 : 상패

#### 7. 기타 사항

- 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3-570-3373, 팩스 : 033-570-3142)

「붙임1」

### 추천대상자 명부

추천 분야	인적사항			공적개요	비고
	성명 (한자)	연령	주소		

「붙임2」

### 2018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            부    문            ]

수 상 후 보 자	주 소	
	성 명 (단체명)	
	전화번호	
첨 부 서 류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각 1부 3. 개인 단체 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증빙자료	

추천자 :

# 추천서

① 추천부문별			
② 인적사항 (단체개요)	주 소 (소재지)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 별
③ 추천사유			
<p>상기 자(단체)를 2018년도 삼척시 농림어업인 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p> <p>2018. . . .</p> <p>추천자 : (인)</p> <p><b>삼척시장 귀중</b></p>			
<p>※ 첨부서류</p> <p>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p> <p>2. 개인 또는 단체 조사서(사진첨부) 1부</p> <p>3. 기타 공적 증빙자료 1부</p>			

# 공적조서

부 문 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공적요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2018. . . .</p> <p>추천자 : (인)</p> <p><b>삼척시장 귀하</b></p>			

## 공 적 내 용

## ※ 작성요령

- 공적내용은 가급적 3매 이내로 작성
- 추천 분야에 적합한 공적내용이 부각되도록 작성
- 추상적인 기술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로 나타나는 실적 중심으로 작성
- 영농시작, 품목선택 동기, 그 동안의 추진과정, 창의성, 현재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등 종합적으로 작성
- 수익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수익과 기타 농림어업외 소득으로 구분하여 사업내용과 수익 등으로 작성

## 공 적 요 약 서

주소			직 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요근무경력					
과거포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lt;공적요지&gt;

### 개인 (단체) 소개서

신청부분				사 진 (3cm x 5cm)
개인	성명	(한자: )		
단체	단체명			
	대표자	(한자: )	참여농가 (호)	설립년도 (년)
	생년월일 (단체등록번호)		나이	만세
	주소		전화 (휴대폰)	( ) -
학력	최종학력		영농어	년
	전공		경력	신청부분
			신청부분	년

#### □ 주요경력사항

구분	내용	관련기관	기간	비고
주요경력				
출장·기고				
수상내역				
교육훈련				

#### □ 경영규모

구분	벼 재배면적(m <sup>2</sup> )			차량 및 농기계보유현황(대)			
	계	자가	임차	차량	트랙터	콤바인	기타

구분	과수원	화훼, 채소			특작·가공	기타
		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작목						
면적(m <sup>2</sup> )						

구분	계	대가축		중·소가축	
		한우(두)	젖소(두)	양돈(두)	양계(수)

어류양식어업					어선어업			
어종	물량	양어장 면적	사육시설 면적	비고	어업 형태	선명	톤수	비고

소유산림면적(ha)					시설부지면적(평)				
계	인공조림	천연림	무입목지	비고	계	양묘포지	임산물 재배지	벼 재배장	비고

#### □ 소득현황(2017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품목	면적	생산량	단위	판매단가	조수입	소득	비고
계							

□ 경영관리 현황(해당란에 ○표)

경영계획수립	①월별수립 ②미수립	경영성과분석	①연말 ②월말분석 ③미분석
일일경영기록	①전산관리 프로그램 이용 ②일일기록장 기록 ③간이 메모장 이용		
경영컨설팅	①민간 유료 컨설팅 ②농업기술센터 경영진단 ③미실시		
컴퓨터	①보유 ②미보유	홈페이지	①보유 ②미보유
가입농업단체 (직위)			
컴퓨터활용	①경영관리 ②전자상거래 이용 ③농업정보습득		
브랜드개발 (품명, 건수)		포장재개발 (건수)	
품질보증실적(보증명, 품목, 건수)			

□ 신기술 개발 등 창의력 발현사항

- 창의적인 노력으로 신기술을 개발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었거나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의 효과를 거둔 사례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수범사례

□ 첨부자료(부문별 공적증빙자료)

: 경영일지 사본(표지, 최초기록일, 최종기록일), 교육훈련 실적, 수상내역  
산림경영실적, 농업경영컨설팅 내역, 지역사회공헌, 해양수산관련 단체활동 등

2018. . .

작성자 주소 :

성명 : (인)

본인은 위 자료를 본인의 개인재산이나 신용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	----	------

삼척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고 제2018-4호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삼척시장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삼척시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제1조 ~ 제2조)
-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규정(제3조 ~ 제4조)
-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제5조 ~ 제6조)
-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7조)
- 삼척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제8조 ~ 제15조)
-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준용 규정(제16조)
- 위생업소 영업주 표창 규정(제17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 : 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76, 삼척시보건소 보건정책과
  - 2) 전 화 : 033-570-3325
  - 3) FAX : 033-570-4169

###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8. 7. .  
제출자 : 삼척시장

### 1. 의결주문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삼척시 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 규정(제1조 ~ 제2조)
- 나.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규정(제3조 ~ 제4조)
- 다. 지원 신청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제5조 ~ 제6조)
- 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7조)
- 마 삼척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제8조 ~ 제15조)
- 바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준용 규정(제16조)
- 사. 위생업소 영업주 표창 규정(제1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1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5. “우수공중위생업소”란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모범음식점
4. 우수공중위생업소
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
4.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지원
5.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2. 영업주가 시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삼척시지부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삼척시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표창)**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생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음식점소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원)	총 소요(예산)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견적서 1부
4.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영업의 종류 : 숙박업(일반, 생활), 음식점(한식, 중식, 분식, 뷔페식 등)

【별지 제2호 서식】

음식·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 소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
4. 세부계획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5.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사진 설명3	사진 설명4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삼척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삼척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삼척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업소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별첨 1】

# 관계 법령문 발취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8., 2013.3.23.>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에 성립된다.

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 관광기본법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별첨 2】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안 제4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안 제4조)
- 산출내역

(단위:원)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계		14,000,000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350,000원×40명=	14,000,000

### 4. 작성자

작성자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 한봉규
연락처	(033) 570 - 4620

## 【붙임 2】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예고내용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